

제153호

행정명령

BRONX,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와 인접 지역에 재산 선포

여러 주에 걸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노리스터로 인한 위험한 겨울 날씨 조건이 2016년 1월 23일경과 그후 지속적으로 뉴욕시, Long Island와 기타 여러 카운티에 존재합니다. 눈보라 조건 가능성으로 뉴욕시와 Long Island에는 총 18~24인치의 강설량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만조시 Long Island에는 보통 정도의 해안 침수도 가능하며 30~40 mph의 풍속과 최대 55 mph의 돌풍이 산발적 정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노리스터는 뉴욕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Bronx,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와 그 인접 지역의 필수 대중교통, 유틸리티 서비스와 공중 보건 및 공공 안전 시스템에 임박한 위험을 제기합니다;

이 사태는 전반적 정전, 보통~심한 해안 침식 및 침수, 주택, 아파트, 업소 및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손상을 야기하고, 나무를 손상하고 뿌리를 뽑고,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을 계속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의 헌법 및 법률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임박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뉴욕주 헌법과 행정부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본인은 Bronx,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의 영토 경계 내와 그 인접 지역에 2016년 1월 23일부로 주 재난 비상을 선포합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B조 제29항에 의거, 본인은 주 종합 비상 관리 계획의 시행을 지시하고, 2016년 1월 23일부로, 주 비상관리실, 보건부, 교통부, 주 경찰본부, 육해군과, 환경보건부, 교정커뮤니티감독부, 공공서비스위원회, 화재예방통제실, 노동부, 공원휴양사적보전실, 총무실, 뉴욕주립대학교, 고속도로청, 향토안보비상과, 기타 필요한 주 기관, 및 미국 적십자사가 주정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방 정부와 개인을 지원하며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또한, 본 선언은 연방 자동차운송업자 안전 규정(FMCSR)의 파트 390~399의 완화를 규정한 49 C.F.R. 390.23(a)(1)(A)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그러한 FMCSR 완화는 유틸리티 전력 복원 요원을 신속하게 뉴욕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선언은 비상관리 지원 협정의 사용을 승인하는 행정부법 29-g의 요건을 만족하고, 행정부법 29-g(3)(c)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본인은 향토안보비상본부장 John Melville을 이 사태를 위한 주 조율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시킵니다:

고속도로법 제38조 제(1), (2) 및 (3)항과 경제개발법 제4조 C항, 교통부 장관이 비상 계약 체결을 승인 및/또는 계약에 설계 및 시공 용역을 통합하며 필요시 그러한 용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

공공건축법 제9조 제(2) 및 (4)항과 경제개발법 제4조 C항, 총무실장이 비상 계약 체결을 승인 및/또는 계약에 설계 및 시공 용역을 통합 및/또는 필요시 그러한 계약과 용역을 60만 달러 이상의 임계치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

주 재정법 제97-G조, 총무실장 또는 향토안보비상본부장이 재난 비상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방 정부, 개인 및 기타 비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 설계 및 시공 용역을 포함하여 음식, 용품, 용역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또는 중앙 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

주 재정법 제112조, 주 헌법 제V조 제1항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교통부 장관, 총무실장, 또는 향토안보비상본부장이 주 계약에 추가 공사, 부지 및 시간을 추가하거나, 공공건축법 제3조에 의거 주 작업의 이전 및 지원을 위한 비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스를 체결하거나, 공공건축법 제9조에 의거 비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 재정법 제136-a조에 의거 전문 용역을 위한 비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주 재정법 제163조에 의거 상품, 용역, 기술 및 자재를 위한 비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

주 재정법 제136-a조, 교통부 장관 또는 총무실장이 한 계약에 설계와 시공 용역을 통합 및/또는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

주 재정법 제163조 및 경제개발법 제4-C조, 교통부 장관, 총무실장 또는 향토안보비상본부장이 필요한 상품, 용역,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도내;

환경보전법 제8조, 뉴욕주 규정집 타이틀 17의 파트 15 및 타이틀 6의 파트 617, 교통부 장관, 총무실장 또는 향토안보비상본부장이 구조물의 교체, 재활 또는 재건축을 위한 공사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내;

2015년 법률 제60장의 파트 F, 교통부 장관 또는 총무실장이 규정된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계-시공 및 최상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도내.

또한, 본인은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수정합니다:

행정부법 제24조; 하이웨이법 제104 및 346조; 차량교통법 제1602, 1630, 1640, 1650, 1660조; 운송법 제14조 제(16)항; 빌리지법 제6-602 및 17-1706조; 일반시법 제20(32)조; 2급시법 제91조; 뉴욕시 행정법 제19-107(ii)조; 뉴욕주 규정집 타이틀 21의 제107.1조, 주지사에게 도로, 하이웨이 및 거리의 교통과 차량 움직임을 규제할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

올버니시에서 본인 자필과 주 옥새로 이천일십육년

일월 이십삼일에 발령.

주지사

주지사 비서